##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491

발의연월일: 2022. 1. 20.

발 의 자:김민기ㆍ기동민ㆍ김병주

김성주 · 소병철 · 이형석

임호선 · 정춘숙 · 정필모

허종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사경찰이 경찰, 검찰과 상호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 상 해양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호 협력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군사경찰과 해당 기관 간의 상호 협력 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.

이에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해양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군사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제6호). 법률 제 호

###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제6호 중 "검찰과"를 "해양경찰, 검찰,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와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	제5조(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
휘·감독)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	휘·감독) ①
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	
의 장의 지휘·감독 하에 다음	
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경찰, <u>검찰과</u> 상호 협력	6 <u>해양경찰, 검찰, 고위</u>
	<u>공직자범죄수사처와</u>
7. · 8. (생 략)	7.・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